

## 행정청의 행위 (열거주의)

- 대상을 1종~5종으로 분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 (법 제160조)
- 수시분 : 신규면허·변경면허
- 정기분 :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함

## &lt; 사 례 &gt;

- ①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1월 2일에 면허의 명의를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월 1일은 양도인이 정기분 면허세를, 1월 2일은 양수인이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(세정 13407-1514, '97. 11. 25)
- ② 종전에 과세대상이 되어 오던 업종이 법령의 개정으로 업종명칭이 변경되었다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종전의 업종에 준하여 과세하여야 함 (도세13426-253, '93. 9. 22)

-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그리고 다음 면허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2년이상 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라도 면허처분을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과세(영 제124조)
  - ① 매장문화재 발굴
  - ② 문화재의 국외반출
  - ③ 농지전용
  - ④ 토지형질 변경
  - ⑤ 사설묘지(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제외한다)
  - ⑥ 사도개설
  - ⑦ 자동차형식 승인
  - ⑧ 계량기기 형식승인 및 특정열기자재의 검사
  - ⑨ 임목벌채
  - ⑩ 건설기계 형식승인